

9개월 회전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**참고자료**이며, **실제 계약은 9개월 회전정기예금특약, 정기예금특약,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**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| 상품 개요 및 특징

- **상 품 명** : 9개월 회전정기예금(단리) / 9개월 회전정기예금(복리)
- **상품특징** : 계약기간동안 매 회전주기마다 변동금리로 영업점 방문 없이 회전되는 정기예금상품.

2 |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,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구 분	내 용					
가입대상	• 제한없음					
가입금액	• 10만원 이상					
가입기간	• 3년 (회전주기 9개월)					
이자지급시기	• 매월이자지급(단리식) : 매월 이자지급 • 만기일시지급(복리식) : 매 회전주기(9개월)마다 지급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,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
제한 사항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					
이자율 (연, 세전)	기본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해당 상품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• 가입 후 매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, 원금(이자금액 제외)만 회전되는 상품입니다. • 9개월 단위로 그 당시의 9개월 회전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어 동일한 주기(9개월)마다 회전				
	만기 후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 후 이자율 적용				
	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경과기간</th> <th>이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 이내</td> <td>최종 회전이율과 만기 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</td> </tr> <tr> <td>1개월 초과</td> <td>보통예금 이율: 연 0.1%(세전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경과기간	이 율	1개월 이내	최종 회전이율과 만기 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
경과기간	이 율					
1개월 이내	최종 회전이율과 만기 시점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					
1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: 연 0.1%(세전)					

구 분	내 용	
만기이자 계산방법	이자 계산식	
	구 분	월 단위
	일 단위	
단리식	원금×연이율/12×월수	원금×연이율/365×일수
복리식	원금×{(1+연이율/12) ⁿ -1} (n은 경과월수)	(원금+월복리이자)×연이율/365×일수
수익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 	
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 (연, 세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(신규일부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을 적용) 	
	예치기간	이 율
	회전주기충족분	회전구간별 약정금리 적용
	회전주기미충족분	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금리 적용
	- 예치기간에 따른 중도해지금리	
	예치기간	이 율
1개월미만	0.1%	
1개월 이상 9개월 미만	약정이율의 50%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개월 미만 : 0.1% 1개월 이상 9개월 미만 : 약정이율 × 50% × (경과월수 / 계약월수) 	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 	
예금 해지 시 불이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. 	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: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「기초연금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,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 등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※ '20.1.1.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포함) 분부터 「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	
분할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(분할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) 	
자동재예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가 	
자동만기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일 이전 신청계좌에 한해 요청한 계좌로 송금 (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입금처리) 	
휴면예금 및 출연	<p>예금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"서민금융진흥원"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,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</p>	
연계·제휴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사항 없음 	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도래 시 SMS 또는 전화 등으로 만기도래사실을 통지 드리고 있으나, 연락처의 변경 또는 수신거부로 등록 되어 있을 경우 안내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. 만기일 이후에는 만기후 이율이 적용 되오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	

구 분	내 용
자료열람 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3 |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-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**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1600-21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sangsanginplussb.com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금리변동형 정기예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**에는 **약정금리 이하로 소비자에게 불리**할 수 있습니다.

※ **계약체결 전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명(날인)하시기 바랍니다.**

① **본 예금 상품을 계약하고,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, 가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, 약정이율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**

예 / 아니오 ⇨ "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"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.

② **본 예금 상품은 회전주기(9개월)마다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으로, 시장금리 하락기에 약정이율 인하 가능성이 커 금리확정형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반면, 상승기에는 약정이율 인상으로 유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?**

예 / 아니오 ⇨ "이자율"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.

③ **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(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)에 대하여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④ **본인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예금거래를 함에 있어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으며,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예금거래의 주요내용, 거래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**

고객확인 : 20 . . . (서명/인)

◎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류	국가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